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5. . . (제 회)	

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김문수 (고용노동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5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직업능력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을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대상인 직업능력개발단체에 추가하고, 글로벌인재 양성사업 등 정부의 청년 해외진출 사업 참여를 통해 습득한 일경험, 교육연수 이력을 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체계적·종합적인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 추가함으로써 청년들의 직무경력을 보다 공신력 있고 간편하게 증빙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대상인 직업능력개발단체에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포함(안 제21조제1항제1호)

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립목적에 해당하는 ‘직업능력개발사업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.

나. 직무능력은행이 수집·관리하는 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범위 확대(안 제23조의2제1항)

글로벌인재 양성사업 등 정부의 해외 일경험, 교육연수 사업 참여 이

력이 직무능력은행을 통해 저축·관리될 수 있도록 직무능력은행이 수집·관리하는 개인별 직무능력정보에 해외 일경험 및 교육연수 정보를 추가함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 예정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. . ~ . .)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

대통령령 제 호

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1항제1호 중 “다른”을 “법 제32조 또는 다른”으로 한다.

제23조의2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」 제12조에 따른 글로벌인재 양성사업 등
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청년 해외 일경험 또는 교육 이수정
보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1조(직업능력개발단체의 직업 능력개발사업 지원) ① 법 제23 조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 체”란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21조(직업능력개발단체의 직업 능력개발사업 지원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
1. <u>다른</u> 법률에 따라 직업능력 개발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 리단체	1. <u>법 제32조 또는 다른</u> ----- ----- ----- -----
2. ~ 4. (생략)	2. ~ 4. (현행과 같음)
② · ③ (생략)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제23조의2(직무능력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) ① 법 제25조제3항 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정보”란 다음 각 호의 정보 를 말한다.	제23조의2(직무능력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4. (생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5. 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」 제1 2조에 따른 글로벌인재 양성 사업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청년 해외 일경험 또는 교육 이수정보
② · ③ (생략)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2 - 7270